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68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황정아 · 최민희 · 강준현
이주희 · 권향엽 · 김 현
이용우 · 박 정 · 이건태
박용갑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

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비수도권 지역 내 발전사업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의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2(비수도권 지역 내 발전사업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의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u>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
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